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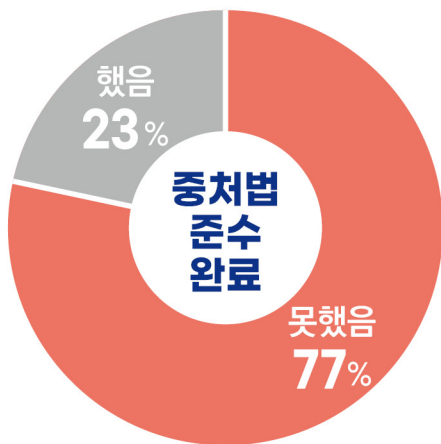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규정한 법규임.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년간 유예하여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어 시행 중임.
- ◆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소규모가 많다는 특성이 있으며, 소규모 업체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1개월 동안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 사업장이었음.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I.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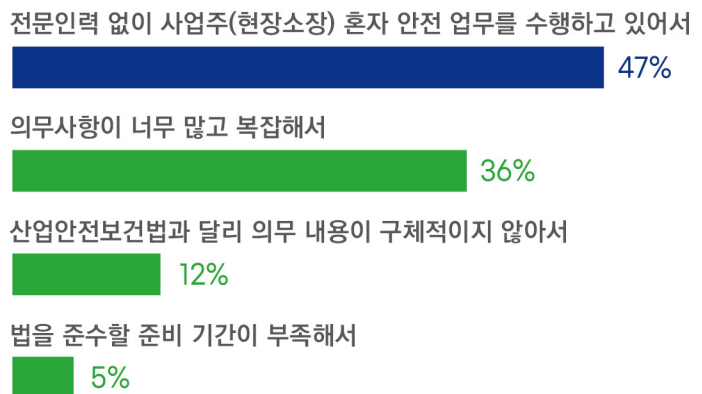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 범위가 확대됨.
-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자본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산업재해 발생률도 높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그림 1]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완료 여부



[그림 2] 소규모 기업이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

#### Q. 소규모 기업이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



[출처] 경총(2024). 50인(억)미만 소규모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 실태조사

##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시민재해영역까지 적용범위가 확장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졌음.

[표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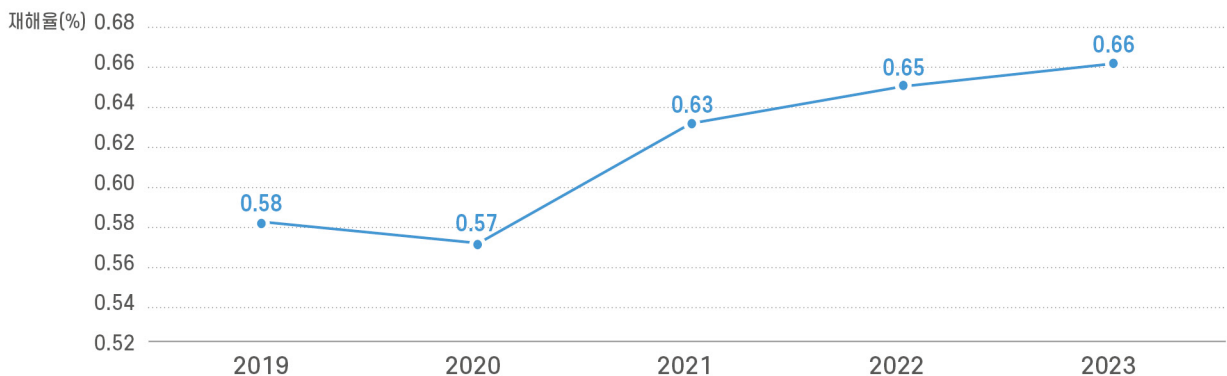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내용	- 사망자 1명 이상 - 부상자 2명 이상(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동일 유해요인)	- 사망자 1명 이상 - 부상자 10명 이상(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 질병자 10명 이상(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처벌 규정	<b>[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b>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사망 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b>[법인]</b> - 사망 : 50억 원 이하 벌금 - 사망 외 : 10억 원 이하 벌금

## II. 산업재해 현황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여전히 증가세

- 국내 산업재해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오히려 산업재해는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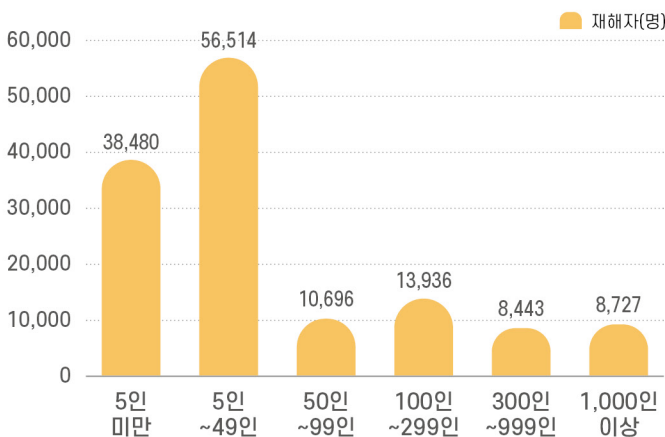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최근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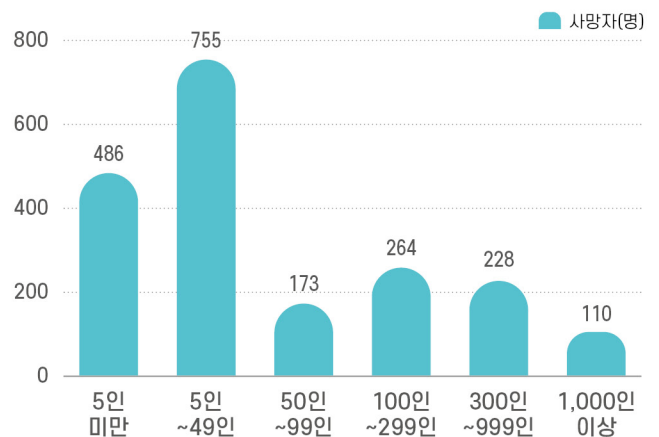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 산업재해자 수 발생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그림 4] 규모별 재해자 수



[그림 5] 규모별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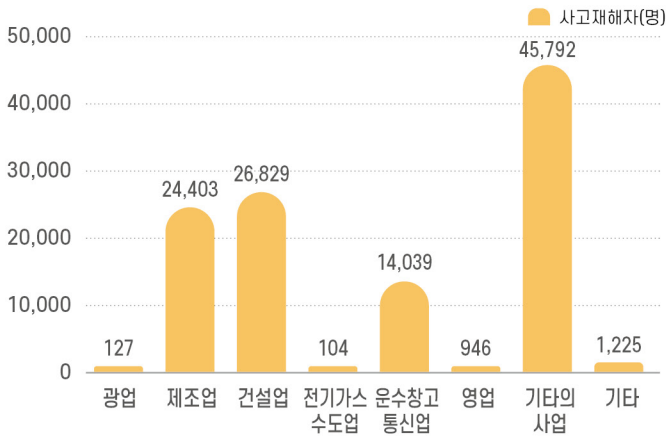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2024), 2023.12월말 산업재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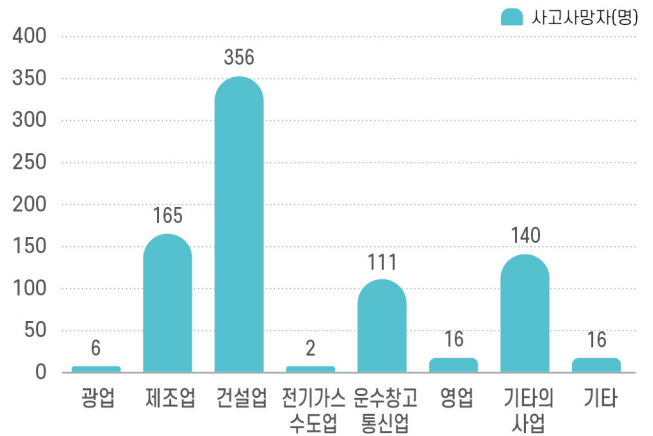
●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산업재해 현황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은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으로 분류되어 건설업의 하위 항목에 속함.
- 감전, 추락, 낙하물과 같은 위험 요소가 동반되는 건설업은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고 사망자가 많은 업종에 속함.

[그림 6] 업종별 재해자 수



[그림 7] 업종별 사망자 수



[출처] 고용노동부(2024). 2023.12월말 산업재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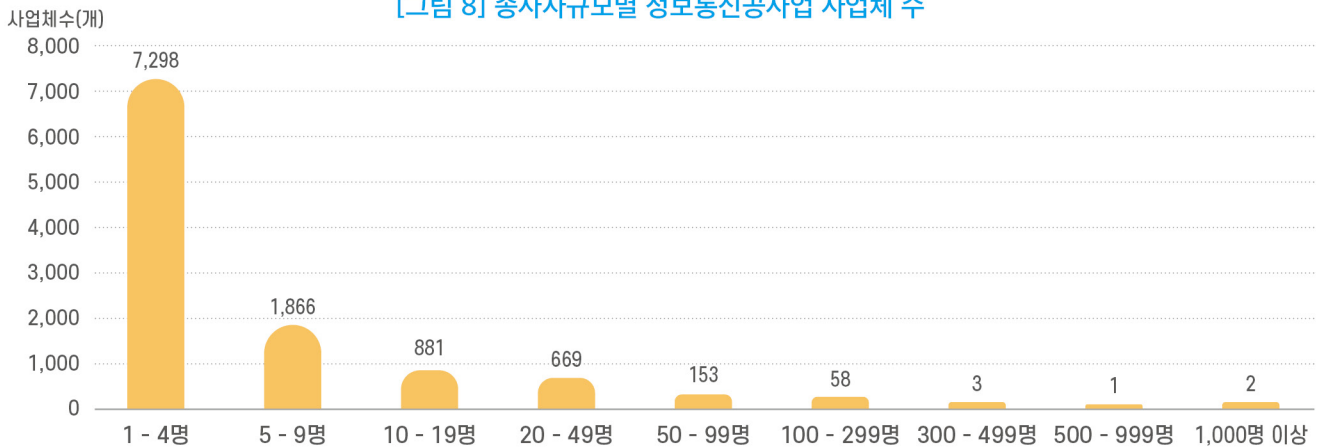
### Ⅲ. 정보통신공사업 특성 및 현황

#### ◇ 정보통신공사업 특성

● 소규모 업체가 다수인 업계 구조

- 정보통신공사업은 소규모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업종임.(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약 92%를 차지)
- 소규모 업체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부담이 커짐.

[그림 8] 종사자규모별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체 수



[출처] 통계청.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 고위험 작업 환경

- 정보통신공사업은 건설업의 일부로 분류되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은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 외주 및 하도급거래 구조

- 정보통신공사업은 하도급을 통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으로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업체의 안전 관리까지 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

#### ◇ 정보통신공사업 공사규모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공사규모별로 3천만원 미만 공사건수가 전체 공사건수의 85.4%로 많은 통신공사업체가 건당 3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주로 하고 있음.

[표 2] 공사규모 및 구성비

공사규모	구성비	공사규모	구성비
3000만원 미만	85.4	10억원 ~ 15억원미만	0.3
3000만원 ~ 4000만원미만	2.3	15억원 ~ 20억원미만	0.1
4000만원 ~ 5000만원미만	1.7	20억원 ~ 30억원미만	0.1
5000만원 ~ 1억원미만	4.3	30억원 ~ 40억원미만	0.0
1억원 ~ 3억원미만	3.9	40억원 ~ 50억원미만	0.0
3억원 ~ 5억원미만	1.0	50억원 ~ 60억원미만	0.0
5억원 ~ 7억원미만	0.4	60억원이상	0.04
7억원 ~ 10억원미만	0.3		
계			100.0

[출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2022). 정보통신공사실적 통계현황(종합)

## IV. 정보통신공사업계 대응

### ◆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해 적절한 조치가 있음.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올해부터 50인(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기에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함.
- 정보통신공사업계는 현장의 중대재해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활동해왔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회원사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사항 매뉴얼과 의무이행 점검표를 마련함.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공중별 위험성평가 모델과 평가방법이 담겨있는 '정보통신공사 위험성평가 모델'을 제작하여 배포했으며,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필요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 통신업계 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 통신 3사는 2022년부터 '통신3사 안전보건협의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각 사의 안전보건 상생방안과 성과 등을 공유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해오고 있음.
  - 9월 초, 통신 공사나 철탑 현장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방지를 위해 기지국 안전시설물을 공동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까지 추진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도 적극 동참하여 정부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 안전에도 기여할 계획임.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고용노동부에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이 평균 19% 인상되면서 현재 40%까지 지원되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 비용도 단계적으로 100%까지 확대될 예정임.

## V. 시사점

### ◆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지 8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 직접적인 사고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음.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보통신공사업계와 관련 협·단체, 그리고 정부는 법률 준수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나가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는 지도 및 지원, 경영책임자는 리더십을 통한 안전문화 구축, 근로자는 안전수칙 준수와 위험요소 제보로 역할을 분담하여 산업현장 전체의 안전수준을 제고해야 함.
- 중대재해 예방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사업장 특성에 맞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정보통신공사업과 같은 중소기업이 많은 업종에서는 협력업체 간 안전관리 통합체계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전체 공급망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음.